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정례회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 위원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2024. 11. 14.(목)

2. 제안이유

-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1,261,560천원
 -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기관 필요
 -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4월 달서문화재단 설립·운영
 - 2025년도에는 달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300,000천원과 운영을 위한 961,560천원을 포함한 1,261,560천원을 출연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 일상화 추진에 기여

4.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과 달리 별도의 정산 의무가 없는 출자·출연금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달서구가 출연한 (재)달서문화재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25년도 회계연도 출연금 계획 규모

- 출연 예정금액 : 1,261,56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 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달서구 출연금	2025년 1월~ 12월	1,115	1,230	1,262	1,262			1,262	

- 기본재산: 300,000천원(2024년 현재 기본재산 3,950,000천원)
- 운영비: 961,560천원(신규사업 기획 등 운영비 추가 시 추정편성 예정)

- 달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바,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0,556	950	765	778	864	886	948	975	1,026	961	1,173	1,230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2022년	2023년		기관 요구액	부서 검토액	증감	전년대비 증감액
총계	961	1,173	1,230	1,262	1,262	-	32
기관운영비	476	513	614	587	587	-	△27
인건비	345	352	370	414	414	-	44
경상비	131	161	244	173	173	-	△71
사업비	485	660	616	675	675	-	59
적립금	300	300	300	300	300	-	-
문화예술진흥	185	360	316	375	375	-	59

- 다만, 지난 3년간 증감을 살펴보면 경상비는 2024년 83백만원 증액, 2025년 71백만원 감액되었고, 문화예술진흥비는 2024년 44백만원 감액, 2025년 5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023년 7백만원, 2024년 18백만원, 2025년 4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적립사업비로 형성되는 기본재산의 관리(예치)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